

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

◇ 서민 취약계층·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**총 3개 사업, 1.1조원 규모** 추경예산 집중 지원

7.4일(금)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금융위원회(위원장 김병환, 이하 금융위)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, 1.1조원이 의결·확정되었습니다.

금융위는 동 추경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,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**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(4,000억원, 신설)**

: 7년 이상,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

② **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(7,000억원, 증액)**

: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*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**

* 지원대상 확대 : (현행) '20.4~'24.11월 → (개선) '20.4~'25.6월 중 사업영위자

**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(現 최대 80→90%) 및 상환기간(現 최대 10→20년) 확대

③ **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(3.5억원, 증액)**

: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

※ (참고) 중기부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(성신회복프로그램)

: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·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·장기 분할상환* 지원

* (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: 소진공·지신보) 분할상환 7년 + 이자지원 1%p (+ 보증료 0.4%p) 지원
(폐업 소상공인 : 지신보) 보증기간 연장(7→15년) + 보증료 전액 지원

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,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금융위원회 < 총괄 >	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조문희 (02-2100-2780)
		담당자	사무관	윤도현 (02-2100-2783)
<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>	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송병관 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장원석 (02-2100-2611)
			사무관	이상원 (02-2100-2838)
<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>	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	책임자	과 장	양윤영 (02-2100-2920)
		담당자	사무관	문성배 (02-2100-2936)
<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>	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임형준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성종현 (02-2100-2511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1.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이유는?

□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·고물가,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·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

○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%대에 머물고,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경기 부진이 지속

* 분기별 성장률(전기비): ('24.2Q) △0.2% ('24.3Q) 0.1% ('24.4Q) 0.1% ('25.1Q) △0.2%

○ 최근 경기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고, 연체 장기화로 인해 채무 불이행도 크게 확대

* 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(%): ('20)0.53 ('21)0.42 ('22)0.55 ('23)0.95 ('24)1.44 ('25.3.)1.67

* 금융채무불이행자 수(만명): ('20)81.8 ('21)74.8 ('22)73.1 ('24)88.3 ('25.3.)91.0

⇒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·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

※ (대통령 추경 시정연설中)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.
코로나 위기부터 12.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.

2.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?

-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
 -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,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
 - 특히,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들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
- 해외 연구들도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
 - 경제적 성과(소득, 고용, 자산·주택보유율 증가)가 장기간 지속되고, 사회적 안정(고용 안정, 사망률 감소, 심리 안정)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

< (해외 연구)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>

- **"The Long-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" (CESifo, 2024)**
 -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, 소득 26% 상승, 취업을 11.7%p 증가, 수년간 자산·주택 보유율이 상승하였으며, 채무구제가 최대 25~34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효과를 보임
- **NBER: "Macroeconomic Effects of Debt Relief: Consumer Bankruptcy Protections in the Great Recession" (Auclert, Dobbie & Goldsmith-Pinkham, 2019)**
 - 개인파산을 통한 채무탕감이 경기침체기 고용 안정에 기여하며, 전국 차원에서 고용 2% 상승 효과 추정
- **NBER: "Debt Relief and Debtor Outcomes: Measuring the Effects of Consumer Bankruptcy Protection" (Dobbie & Song, 2014)**
 - 파산 승인이 난 경우 연간 소득 \$5,562 증가, 5년 내 사망률 1.2%p 감소 및 주택압류율 19.1%p 감소
- **PNAS: "Reducing debt improves psychological functioning ... Singapore" (2019)**
 - 개인에 대한 채무해소가 인지능력 향상, 불안감 11% 감소

3.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?

-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,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
 -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고,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
 -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, 정상적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,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
-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감면 기준을 설정
 - 5천만원 이하,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·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
- 한편,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하며,
 -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음

<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>

■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 환급(‘24년 완료)

- 은행권 자율로 총 1.5조원 이자 환급(1인당 최대 300만원), 중소기업권 총 0.2조원 이자 환급(1인당 최대 150만원)

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(‘24.12월)

-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, 장기분할상환(최대 10년), 금리감면 등을 지원
-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(최대 30년) 및 3% 수준 저금리 지원
-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·대출 출시

■ 성신회복 프로그램(2차 추경, 중기부)

-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(7년), 금리감면(△1%p) 지원
-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(7→15년)

4. 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데?

□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

○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,
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측면*

* 예 급여압류, 통장압류, 직업변경, 단순 일용직 외 취업곤란 등

○ 과거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,
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

※ (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기고)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시행한 채무면제 사업의 실제 사례를 보면 채무 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한 만큼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.

□ 다만,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,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,

○ 관계부처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(재산·소득 등) 심사를 거쳐,

-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“정말 어려운 분들”의 채무만 소각할 것

○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,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

* 예) ①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은 매입 범위에서 제외
②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

5. 외국인도 지원하는지?

- ☐ 외국인 지원 범위는 과거 채무조정 사례, 여타 예산사업 등을 감안하여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
- 참고로, '13년 국민행복기금 및 '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음

6. 새출발기금과의 사각지대 문제는?

- 새출발기금은 '20.4~'24.11월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가 보유한 '20.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지원
 - 따라서 '18.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과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
- 다만, 예외적으로 '20.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,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,
 - 이 분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

< 연체발생일에 따른 지원 여부 >

구 분		~'18.6월	~'20.4월
새출발 기금	법인* 소상공인	지원대상	
	개인사업자*		
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	개인사업자	지원대상	-
	개인		

* '20.4~'24.11월 사업을 영위한 법인·소상공인

참고2

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

-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
 - (추심대리) 채무자대리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
 - (소송대리) 불법추심 또는 법정 최고금리(연 20%) 초과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구제를 지원
- 채무자대리인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'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'에서 온라인(인터넷 또는 모바일) 신청이 가능하고,
 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,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☎1332→3번→**신설**6번) 및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☎132→0번)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

※ 채무자대리인(변호사)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

- ① (전화) 금융감독원 **불법사금융신고센터**(국번없이 ☎1332→3번→**신설**6번)
또는 **법률구조공단**(국번없이 ☎132→0번)
- ② (인터넷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민원·신고
→ 불법사금융지킴이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
→ “**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**”
- ③ (모바일) 스마트폰 카메라로 오른쪽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
- ④ (방문)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(전국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)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소)

QR코드

